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 펀드명 :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의3(미국ERISA 관련 투자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ERISA관련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판매회사를 공시한다. 1.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이 조에서 “ERISA”라 한다)에 의해 선관주의의무와 특정 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2.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 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자자 3. 제1호 또는 제2호 투자자의 자금을 일부라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자자 4.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의 동일 종류 지분증권(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ERIS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 투자자가 합산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ERISA관련투자자는 투자할 수익증권의 종류와 투자금액 등을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	<u><삭 제></u>

하여야 한다.	
<신 설>	<u>부 칙</u> <u>(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u>